전라북도 메타버스 활용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메타버스 활용 콘텐츠 제작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

(재)전북테크노파크 전북디지털융합센터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장개화 초기단계인 가상융합경제 시장의 선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「2022년 메타버스 활용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」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합니다.

2022. 03. 29. (재)전북테크노파크 원장

1. 사업개요

- □ (사 업 명) 2022년 메타버스 활용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
- □ (사업내용) 수요맞춤형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지원, 마케팅 및 활성화 지원, 메타버스 혐의체 운영 등

2. 지원내용

- □ (지원대상) 공고일 기준 전라북도 내에 본사, 연구소 등을 소재한 기업으로 중소기업, 소상공인 등(1인 창업, 스타트업 등 포함)
 - 전라북도 공공행사 및 사업을 홍보(운영)하는 협회, 단체, 조직 등 (예시 : 새만금세계잼버리, 2023 아태마스터스 대회 등)

□ (지원내용)

구 분	세부내용	지원금액	비고
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지원	수혜기업 맞춤형 메타버스 콘텐츠 및 서비스 제작지원, 메타버스 서비스 도입 지원 등	25백만원 내외 (10개사 내외)	VAT 제외

[※]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, 지원건수가 조정될 수 있음.

□ (지원방식)

- o 수혜/공급기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협약체결 후 지원금의 70%를 공급기업에게 선지급하고, 최종평가 후 잔금(30%) 지급
 - * 선금 집행을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의 추가서류 제출 요청(SGI 서울보증보험 등)

□ (매칭방안)

- 도내 공급기업 POOL 확보 및 구축 [붙임자료1 참고]
 - 서류 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적격성 검토 완료하여 공급기업 POOL 구축
- ㅇ 수요-공급 매칭하여 사업 참여
 - 수요기업에게 공급기업 POOL을 참고하여 1차 선택/매칭하여 사업 신청
 - 다수의 참여기업이 특정한 공급기업을 선택하는 문제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공급기업은 최대 2건으로 참여 제한

3. 추진일정(안)

ㅇ 추진절차

사업공고 및 접수	현장실태조사 및 선정평가	협약체결 및 선지급 지급	사업수행 진도점검	최종결과보고 및 최종평가 등
`22.3월 말	`22.4월 중	`22. 5월 초	`22.5 [~] 9월	`22. 10월
공고 및 접수	선정평가 및 수요-공급매칭	3자협약, 선지급(공급기업)	중간점검	죄종평가/ 잔금 지급

* 사업운영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.

ㅇ 평가지표(안)

평가항목	세부항목	배점
과제목표 및 추진의지	추진목적, 추진의지, 수행관리체계	30
과제기획 및 내용	과제 이해도 및 차별성	50
사업성 및 기대효과	상용성, 기대성과	20

* 사업운영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.

4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□ 신청방법

- (공고기간) 2022. 03. 29(화) ~ 04. 22(금)
 - 전북테크노파크(www.jbtp.or.k) 지원사업(사업공고) 게재
- (접수기간) 2022. 04. 18(월) ~ 04. 22(금)
- o (접수방법) 담당자 이메일 접수
 - 정주영 책임연구원(☎ 063-214-9803), jjy@jbtp.or.kr

□ 제출서류

○ (제출방법) 제출서류 번호순으로 일괄 스캔 후 압축하여 파일명을 "신청기업명.zip"으로 이메일 송부

No.	제출서류	파일형태
01	신청서 1부(붙임 1)	hwp
02	사업자등록증(필수) 1부 (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기타 전문회사 등록증 등)	PDF
03	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(`21, `20, `19년 순으로 첨부요망) * 매출증빙(표준재무제표,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서), 결산완료기준 최근 3개년	PDF
04	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.	PDF
04	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1부.(공고일 이후)	PDF
05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(붙임 2)	PDF
06	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(기업)정보 이용동의서(붙임 3)	PDF
07	청렴이행각서 1부.(붙임 4)	PDF
08	(기타) 회사 소개자료, 관련 자료 등	-

【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】

- 1. 제출서류 PDF 변환 시, 반드시 기본인쇄(1페이지 1쪽)/컬러로 설정 요망(1페이지 2쪽 변환 불허)
- 2.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, 모두 선정평가 시 평가 자료로 활용
- 3. 평가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
- 4. 제출서류의 미비, 착오 등에 의한 불이익 책임은 해당기업에 있음.

5. 기타 유의사항

□ 지원제외 사항 등 유의사항 안내

지원제외 사항

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.

- 1. 기업의 부도
- 2.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3.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 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4. 파산,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)
- 5. 최근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
- 6.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
- * 정보통신·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 48조(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)와 관련하여 접수 마감 일 현재 참여제한 적용을 받고 있는 기업. 대표자는 과제 신청이 불가함
- ㅇ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
 - 타기관의 IPR(지식재산권)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 -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
 - 동일(유사)과제에 대해 타 기관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
 -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정산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
 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
□ 부정청구에 대한 제재

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시행(2020.1.5.)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· 보상금 · 출연금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(이해 "공공재정지급금" 이라 함)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됨

※ 제재부가금

- ① 허위청구(청구할 자격이 없음에도 지원금 등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)
 - : 지워금의 5배
- ② 과다청구(받아야 할 지원금 등 보다 초과 청구하여 받은 경우)
 - : (받은 지원금 원래 받아야 하는 지원금)의 3배
- ③ 목적외 사용(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)
 - : (정해진 목적이나 용도 외 달리 사용한 지원금)의 2배